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수지 의원 발의)

의안 번호	735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5월 04일

발 의 자: 채수지 의원(1명)

찬 성 자: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형재, 남궁역,
문성호, 박상혁, 박성연,
박영한, 박춘선,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복자,
심미경, 유만희, 유정인,
이상욱, 이종태, 임만균,
장태용, 정지웅, 최민규,
홍국표, 황유정 의원(32명)

1. 제안이유

- 최근 학교폭력의 발생 건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폭력의 유형과 양상이 흉포해지는 등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함. 특히 피해 학생은 자해를 시도하고 진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요구가 강한 만큼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따라서 신고의무를 강조하고,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개인이나 단체에 표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문 제목을 ‘피해신고 등’에서 ‘학교폭력 신고의무’로 변경하고 직무상 신고의무가 있는 자를 명시하여 신고의무를 강조함(안 제8조의 2)

나.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신고하거나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또는 피해의 최소화에 기여한 자나 단체에 표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함(안 제16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의 제목“(피해신고 등)”을“(학교폭력 신고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학교폭력사실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즉시 학교폭력예방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
4. 학교폭력예방 관계기관의 종사자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기관, 단체 및 개”를 “기관 및 단체·공무원·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제8조의2에 따른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또는 학교폭력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공무원·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의2(<u>피해신고 등</u>) ① (생략) <u><신 설></u></p> <p>② <u>제1항에 따라</u> 신고를 받은 기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③ 교육감은 <u>제1항에</u> 따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 등의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16조(표창)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p>	<p>제8조의2(<u>학교폭력 신고의무</u>)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학교폭력사실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즉시 학교폭력예방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u></p> <p>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u>교직원</u></p> <p>2. 「의료법」에 따른 <u>의료기관의 종사자</u></p> <p>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u>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u></p> <p>4. <u>학교폭력예방 관계기관의 종사자</u></p> <p>③ <u>제1항과 제2항에 따른</u> ----- ----- ----- --.</p> <p>④ ----- <u>제1항과 제2항</u>----- ----- -----.</p> <p>제16조(표창) ① ----- -----</p>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신 설>

기관 및 단체·공무원·개-----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제8조의2에 따른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또는 학교폭력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공무원·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